

#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연구

## -사외이사 평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윤계섭 | kesopyun@snu.ac.kr

### 1. 서론

사외이사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1996년부터이지만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라고 생각된다.<sup>1)</sup> 당시 심각한 기업 경영 부실의 원인을 금융기관과 상장회사들의 이사회가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를 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고 영미식 기업지배구조를 도입하고자 한 것이 단초이다.

이후 상법과 증권거래법이 개정되고 상장기업 이사회에서 과반수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었으며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제도가 우리나라 이사회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증거는 매우 적었다. 이에 따라 각종 법규의 관련 규정을 보다 세밀하게 규정한 사외이사 모범 기준이 2000년 등장하였다.<sup>2)</sup>

이 기준은 경영진과 사외이사 제도에 대한 보완과 아울러 이사의 책임을 강조한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 1) 사외이사제도가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으로 공식적으로 채택된 것은 1998년 2월 6일 비상경제대책위원회가 경제 회복 실천방안 중의 하나로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에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하였다. 비공식적으로는 1996년부터 현대그룹, 1997년 포항제철 등이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 2) 사외이사 직무수행 기준은 2000년 12월 1일 사외이사제도 개편 및 사외이사 직무수행 기준 제정위원회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명의로 작성되었다.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 강제력은 없고, 가능하면 이 기준을 따르라는 것이었으나, 2007년 12월 13일에 개정되었다. 그 후 전국은행협회 주도로 금융기관의 특성을 살린 은행 등 사외이사 모범기준이 2010년 1월 25일 제정되었다. 이는 상장회사협의회 모범기준에 비해서 동종기업의 이사 취임 금지, 임기, 총재직 연한 제한 등 규제를 보다 강화한 것이다.

것이다. 이러한 기준이 나타난 이유는 사외이사의 본원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와 책임을 인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기업에 따라 대주주나 경영진에 대한 횡령이나 배임 등에 대해 사외이사의 견제가 없어서 회사가 상장폐지 되거나 사외이사나 경영진 사이의 유착관계로 말미암아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의 많은 제도가 영미제도를 도입했다고 했지만 전통이나 관습 사회적 가치관에 따라 변질되고 운용에 있어서는 기대했던 결과들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각종 제도가 사회적 풍토에서 태어나는 배경이 서로 다르고 이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기계를 공장에 도입하는 것과 달리 선진국의 제도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운용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경우에 따라서 명칭은 같지만 실체는 전혀 다른 형태로 운용되는 경우도 흔히 있다.

이 소고에서는 영미식 사외이사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운용되는 사외이사제도와 실질적으로 다른 사유를 미국의 사외이사제도 운용사례를 토대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양복을 외국에서 수입해서 입을 때 우리 체격에 맞게 고쳐 입어야 하듯이 외국 제도가 우리나라 현실에 맞추어 조정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때로는 외국의 치밀한 운용 실태를 모른 채 문헌적으로 무늬만 도입했을 때 기대효과는 거의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 사외이사제도에 있어서 외국과 같이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이유는 상당히 많이 있지만 이 제도의 특징을 서로 모르는 채 도입에 급급한 것도 문제라고 본다.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외이사 직무수행 모범기준은 없지만 사외이사를 평가하는 제도는 발전되어 있다. 특히 사외이사를 자신이 평가하는 설문서는 매우 자세한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를 근거로 해서 무모한 행위를 하였을 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이 설문서를 토대로 사외이사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자료의 공개는 우리나라 사외이사제도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나라 고유한 현실과의 조정문제도 따르리라고 본다.

사외이사제도가 매우 광범하게 발전한 영미에서도 역사와 함께 계속 변화하고 있지만 이 소고의 연구범위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독립성 평가문제와 이에 따른 책임문제를 검토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주로 검토해 향후 한국적 사외이사 제도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 2. 사외이사 제도의 운용현황과 문제점

사외이사를 부르는 호칭은 국가마다 다른데 미국이 주로 independent director 라고 해서 독립성을 강조하는데 비해서 OECD에서는 non-executive director 라고 부른다. 이는 회사에 상근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외이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행한 연구에서 실태 조사를 하였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sup>3)</sup>, 이사회에서 경영진, 최대주주, 외부인(정부인사 등) 등의 의견에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답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경우에는 그 이유로서 정보의 부족과 전문지식의 부족을 들고 있다.<sup>4)</sup> 이는 비상근 이사의 특성상 정보의 부족을 들 수 있겠지만, 전문지식의 부족은 문제가 있다. 이는 결국 부실한 의사결정으로 연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사외이사의 선임시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필요하고 또한 사외이사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미한다.

또한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경영진, 최대주주가 추대한 사외이사와 최대주주와 경영진의 관계는 독립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sup>5)</sup> 이에 대한 사실 여부가

3) 권세훈. 중소기업 사외이사제도의 효율적인 운용방식. 2010. 11. p. 49. 유가증권 시장 60.8%, 코스닥 시장 45.9%

4) 위의 연구. p. 49. 정보의 부족(유가증권 시장 29.6%, 코스닥 시장 12.3%), 전문지식의 부족(유가증권시장 33.3%, 코스닥시장 9.6%).

5) 위의 연구. p. 50. 이들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 대다수를 점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 62.2%, 코스닥 시장 48.0%

충분하지 않다.

사외이사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를 적격자이면서 독립적인 인사를 선정해야 하는데 추천 방법부터 문제가 된다. 문제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추천하는 것이 대다수인데<sup>6)</sup> 이렇게 되면 결국 이들에게 의존하여 이사회에서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외국과 같이 사외이사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거나 소액주주, 기관투자자들의 의견을 받거나, 공모절차를 거쳐 추천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

또한 사외이사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해도 이 회의에 회사의 실권자나 경영자가 참여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경우에 결국 이들이 주장한 이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sup>7)</sup> 그러므로 외국의 사례와 같이 해당회사의 경영진이나 실권자가 참여하지 않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sup>8)</sup> 이 경우 가장 중요한 판정 기준은 사외이사로서의 적격성과 독립성 판단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 2.1.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적격성

사외이사 자격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최근에 작성된 은행들 사외이사 모범규준이 일반 상장기업에 비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자격을 설명하고 있다.

일반상장 기업의 사외이사 중에서 자격 요건이 모자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듣는 경우가 많고, 금융기관은 전문지식이 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자격 요건이 강화되었다. 금융기관의 공시에 따라 자격요건에 따른 사외이사 구성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6) 위의 연구. p. 53. 유가증권시장 48.1% 코스닥시장 47.1%

7) 위의 연구에서 독립적이지 않은 경우에 대한 설명은 대주주 및 주요 주주 경영진이 사외이사 선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53.3%). p. 67.

8) 이러한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끼리 폐쇄형 클럽이 되어 문제가 될 수 있기도 하다. 위 연구에 따르면 현행요건을 보다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71.4%). p. 55.

〈표 1〉 자격요건에 따른 사외이사 구성현황<sup>9)</sup>

업권	구분	1	2	3	4	5	6	7	8
은행지주회사		9	5	12	1	0	11	0	4
은행		15	9	28	7	0	12	0	10
금융투자회사		6	6	19	2	0	12	0	4
보험		15	10	20	6	0	13	1	12
총계		45	30	79	16	0	48	1	30

※ 주 : 구분의 번호는 모범규준에서 열거하고 있는 적극적 자격요건

1. 전문경영인(임원이상)
2.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3.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학위소지자로 5년 이상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근무
4. 10년 이상 금융회사에 종사
5. 주권상장법인의 재무, 회계 관련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
6.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또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에서 재무·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
7. 금융감독원 검사대상기관(외국금융기관 포함)에서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
8.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앞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 또는 사추위가 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는 금융기관에 종사한 사람이 사외이사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sup>10)</sup>

사외이사를 선임하는데 있어서는 회사임원과 같이 적격성을 통과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특히 이를 중요시해서 전통적으로 적격성 검토(Fit & Proper Test)를 해왔다.<sup>11)</sup>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해당인사의 정직성(honesty), 성실성(integrity)과 명성(reputation)이다. 이런 특성들은 사외이사의 자기평가설문서에서 기술하듯이 범죄사실, 법규 위반 사실, 각종 규제기관으로부터의 제재 여부가 평가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조사를 하기도 한다. 단 해당 직위에서 해임이 되었을 때도 해임사유를 설명해야하고 이는 과거 수년간의 경력 조회를 통해 확인한다.

9) 이시연, 금융회사 지배구조 리스크 완화 방안 토론회, 2011.4.12.

10) 위의 연구, p.15. 외국의 경우는 10년 이상 금융회사에 종사한 인사가 1/3이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감독기관 종사자, 연구직들이 많이 있다.

11) FSA, the fit and proper test for approved persons, FIT 2: the main assessment criteria.

또한 임원의 책임과 권한에 따른 능숙도(competence)와 능력도 검증되어야 하며  
약물복용사실 등도 검토한다. 또한 교육 경력과 함께 연수 실적도 검토해서 새로운  
경영환경에 적응 능력도 검토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따르는 원칙은 comply or  
explain으로서 기준이나 원칙에 대한 준수 여부와 함께 예외가 있으면 설명하라는  
설문서 지시사항과 같다.

### 3. 사외이사의 책임

사외이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상법상 이사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규정이 모두 적용  
된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판례를 가지고 원용해 보면 1985년의 대법원 판례가 있다.<sup>12)</sup>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아니한 평이사는 이사회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를  
통하여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시하는 것이 통상적이긴  
하나 평이사의 임무는 단지 이사회회의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으며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 이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감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업무담당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이사가 감시 의무를 위반해서 이를 방치할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판례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상관없이 이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지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추궁 당하는 경우에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등 7개국을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사외  
이사들이 업무집행과정에서 소송을 당해 손해배상을 하는데 이를 개인 재산으로 이행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sup>13)</sup>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 8월 사외이사들이 회사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12) 김화진, 이사회, 박영사, 2007. 2. p. 213-215. 대법원 1986. 6. 25. 선고, 84 다카 1954 판결.

13) 김화진, 위의 책, p. 214. B. Black, B. Cheffins, M. Klausen, Liability risk for outside directors: a  
cross-border analysis: 10 European Financial Management, (2004)

것을 명하고 있다.<sup>14)</sup> 단지 이들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거래에 대해서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을 전체의 5%로 감경 받았을 뿐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외이사들은 이사회에 참석하고 수당만 받을 뿐이라는 통념을 깨뜨린 판결로서 사외이사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

사외이사가 받은 보상은 상대적으로 소액인데 비해서 회사에 대해서 부담하는 법률적 책임은 한도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을 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내이사는 물론 사외이사에 대해서도 임원배상 책임보험 (D&O: 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Insurance)에 가입하는 회사가 있는데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sup>15)</sup>

귀사의 사외이사는 임원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모르겠다
유가증권시장	30.3	55.3	14.5
코스닥시장	12.3	64.3	13.5

사외이사 1인당 평균임원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는 얼마입니까

유가증권시장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코스닥시장	17.2억원

이로 미루어 우리나라에서는 비록 임원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상 한도가 매우 낮아 손해배상 규모가 거액일 경우에 사외이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교수들을 외부기관의 사외이사로 승인할 때에 손해배상 책임보험가입을 전제로 승인하고 있다. 앞으로 경영의사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규모가 커질 것에 대비하여 손해배상 보험 보상한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14) 김화진, 위의 책, p. 217. 서울 남부 지방법원, 2003가 합 1176 (2006.8.17)

15) 권세훈, 앞의 연구, 자본시장연구원, 2010. 11. pp. 58-59.

### 3.1. 사외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로 선임되면 법령과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된다.<sup>16)</sup> 이사가 되면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해서 이익을 얻을 수 없으며<sup>17)</sup>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를 하지 못하고, 다른 동종기업에 이어나 감사로 취임할 수 없다.<sup>18)</sup> 또한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영업상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sup>19)</sup> 만약 사외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해당 은행 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은행 등 또는 제3자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sup>20)</sup> 이러한 조항들은 우리나라 상법상의 충실의무기준을 세부적으로 강조한 것이며 영미법상의 주의 의무까지 광범하게 포괄한 것으로 보인다.

### 3.2. 최고경영자(CEO)의 선임권과 책무

이사회 활동에서 중요한 이사들의 임무는 차기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최고경영자 대상자를 탐색하고 영입을 준비해야 한다. 우선 회사 내외에 걸쳐 후보자를 물색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이는 회사 최고경영자에 유고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서 승계 프로그램까지 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 회사에서는 익숙하지 않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이사회的重要의 의무가 승계 계획이다. 훌륭한 CEO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후보자 군이 형성되어야 하며 이들의 자격을 검토하고 전략수행 능력을 평가하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상설 프로그램이 되었다.

이에 따라 지명위원회(nominating committee)는 사외이사, 경영진 선임에서 CEO 선임까지 역할이 넓혀지고 있다. 지명위원회는 외국의 경우에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지명위원회의 구성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사외이사 후보 추천으로 한정해서 논의되고 있지만 회사 임원 선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16) 상법 제 382조의 3.

17) 내부자 거래에서 얻은 이익은 적발되면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18) 은행 등 사외이사 모범 기준 제6조 4와 제6조 4의 ②의 2. 경업금지에 해당. 이로써 금융기관의 사외이사는 한 회사만 할 수 있게 되었다.

19) 위의 기준 제15조 ③.

20) 위의 기준 제15조 ④.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지만 최고경영자나 대주주가 위원으로 선임되어있을 때 그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다.

### 3.3. 사외이사의 임기 제한

사외이사의 임기제한은 미국의 경우에 따로 정해진 바 없으나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의 사외이사에 대해서 2년으로 하되 연임 시 1년 이내로 하고 연속해서 5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게 하고 있다.<sup>21)</sup> 만약 임기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선임되면 연속해서 재임하는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오랜 기간 동안 사외이사를 할 경우에 경영진과 유착관계가 될 것을 우려한 것인데 유럽에서도 회사 내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장기 재임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sup>22)</sup>

문제는 동일한 최고경영자나 이사회 의장과 같이 얼마나 재임하였는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너무 자주 교체할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좋은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sup>23)</sup>

## 4. 사외이사의평가

훌륭한 이사회가 구성되어 기업이 경영을 잘 하려면 이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훌륭해야 하고 아울러서 이사회 운영을 잘해야 할 것이다.

이사의 자격 중에서 특히 사외이사는 기업 경영진이 아닌 외부인사이기 때문에 이를 평가해서 무능한 사외이사를 퇴출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각종 정보와 자료가 필요하다. 사외이사는 사내 이사와 달리 경영실적도 없고 이사회 참가 실적만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21) 은행 등의 사외이사 모범규준 제11조.

22) 이병윤, 이시연, 은행권 사외이사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09. 12, pp. 30-32.

23) 위의 연구, p. 31. D.Walker A review of corporate governance in UK banks and other financial industry entities, 2009.7

사외이사 모범규준에 따르면<sup>24)</sup> 회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내용을 공정하게 평가해야하며 이를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과 절차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조항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평가하는 서식을 보면 매우 간단하고 이에 대한 평가가 피상적으로 될 수 밖에 없게 하고 있다. 이를 보강하려면 우선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이 정보는 통상적인 이력서가 전부일 뿐이다.

이에 비하여 미국에서는 사외이사와 임원들에게 설문서를 통해 자기 정보를 자세하게 기술한다. 미국의 투자관계회사의 펀드관련 사외이사와 임원들에 대한 질문서 사례를 통해 우리와 비교해보자.

#### 4.1. 사외이사와 임원들에 대한 설문서 작성

사외이어나 임원들에게 자기 자신의 정보를 직접 기술하는 설문서의 작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들이 회사업무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독립성, 적격성이나 전문성의 확보 뿐만이 아니라 자신은 물론 자신의 활동의 배경인 가족, 친지에 대해서 설명하게 하고 해당 회사의 주식지분 소유상태나 증권거래, 범죄여부, 법률위반 사항, 보상관계 등을 답하게 되어 있다. 모든 설문에서 “예”와 “아니오”로 대답한 다음 해당 사항이 있으면 직접 기술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장문의 설문서는 대답하는 사람에게 매우 귀찮은 일이 되겠지만 감독 당국이나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좋은 증거 자료가 되게 된다. 예를 들어, 특정 사안에 대해 “아니오”라고 했는데 사실이 발각 되었을 경우 법규위반이 되고 이 자료가 거짓진술을 한 증거가 된다. 부록에 붙어있는 설문서는 미국에 어느 투자펀드의 설문서로서 총 44개의 질문을 상세히 답하게 되어 있다(모든 설문서가 비슷한 형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설문서가 없이 해당 임원의 이력서 외에는 없기 때문에 실제 상황이 나타나야 비로소 조사하게 될 뿐이다. 또 이러한 진술은 이사회에서의 평가에도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모두 44 문항에 달하는 질문내용을 분석해 보자. ( ) 내는 설문서 번호임.

---

24) 사외이사 직무수행 규율 9.1 사외이사의 평가 2007. 12. 13.

i) 일반적인 정보 (1. A, B, 2. A, B.)

우리나라의 이력서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 신상(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에 대한 정보인데, 과거 5년 동안 내용을 적게 되어 있다. 본인 및 직계 가족의 과거 5년간 근무상황 (회사명칭, 직위)을 적어야 하는데 이것은 향후 독립성을 평가하는 정보가 된다.

ii) 적격성 판단 정보 (2. C)

작성자 자신의 특수경력, 자격요건, 속성 등에 대해서 기술하여 해당 보직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iii) 소유주식 지분 보고 (3, 4, 5)

해당 회사에 투자한 주식지분을 보고하는데 명목적 소유가 아닌 실질적 소유 (beneficiary ownership) 와 담보여부, 향후 60일 내에 취득할 주식의 숫자를 보고 한다.(금액은 가격변동 가능성 때문에 범위로 표시한다.) 그리고 이 주식은 공동으로 보유하거나 포기할 경우에 대해서도 기술한다. 특히 5% 이상 보유한 사람이나 그룹을 잘 알고 있는 경우에 이를 보고 한다. (이는 나중에 이들과 연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회사는 사외이사가 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 주식 소유 자료는 공시하게 된다.

iv) 독립성 판단 정보 (6, 7, 11)

설문지 작성자와 회사와의 독립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회사 관계자들과 가족관계를 설명한다. 회사 경영진과 파트너, 임원, 자문위원, 경영진이 될 사람등과의 관계를 쓴다. 임명이나 선정과정에서 투표약속이나 같이 동의할 것을 합의, 공모하는 것을 알면 기술하게 되어 있다.

v) 배우자 거래 가능성 검토 (8)

과거 3년간의 거래나 조만간 행할 거래에 대해서 가족 또는 회사 임원, 10% 이상 지분을 소유한 파트너등과 약속한 거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

vi) 회사와 관련된 부채, 보험, 보증관계 (9, 12)

과거 3년간 12만 달러를 초과한 부채가 있으면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

vii) 보고하지 않은 증권 거래의 사후보고 (10)

법규에 규정된 시기에 보고하지 못한 증권거래나 지분소유보고 등에 대해서 사후에 라도 보고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위반여부에 대해서 별칙부과는 이 설문서 작성과는 상관이 없다.

viii) 관련 회사나 공인회계사와의 관련 (14, 15)

이 설문서가 펀드 관련이기 때문에 투자은행과의 연계관계를 물었고 감사법인과의 관계를 설명하게 해서 독립성을 묻고 있다.

ix) 법규위반과 적격성 검토 (17-26)

설문서 작성시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법규 위반 여부이며 이는 적격성 검토 (Fit & Proper test)에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 이를 틀리게 기록했을 경우에는 적격성 검토에서 실격이 된다.

중범죄나 경범죄 위반으로 유죄인정을 한 경우가 있는지 투자 관련 사업 위반, 증권거래 위원회(SEC)나 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법규위반, 기타 규제 당국의 제재를 받았는지 여부, 외국 기관(외국정부, 법원, 규제당국, 거래소 등)으로부터의 제재여부 등을 물어보고 있다. 소송관계, 파산 혹은 지급 불능한 증권 회사와 관련여부, 펀드로부터의 받은 보상 등에 대해서 과거 3년간 기록을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x) 다른 회사와의 고용관계, 증권거래, 은행 및 투자회사와의 사업관계 (27-32)

과거 3년간 다른 회사의 임직원, 증권거래, 은행이나 투자회사의 임직원 이었는지를 기술한다.

xi) 지배관계 (33-44)

과거 3년 동안 펀드의 법률 고문으로, 변호사로 활동했는지 여부, 관련 당사자들 끼리 대출을 했는지, 계류중인 법적 분쟁이 있는지, 관련 회사의 경영진으로 활동한 적이 있는지, 5% 의결권이 있는 지분 소유 여부, 감사위원회 활동여부, 실질 소유 지분 상태, 12만 달러 이상의 소유지분을 가진 회사 이름(자신과 직계 가족 소유) 이들과의 거래,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이해당사자, 자문보수의 직·간접적인 수령 여부 등을 보고하게 되어 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요약하려고 노력했지만 매우 방대한 내용을 해당관련자 등이 기술하기가 매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기술하지 않았을 때 받을 징계를 생각해 본다면 독립성이나 적격성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 사외이사용 설문지

이 설문지는 미국 증권법하에서 법적인 요구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정보를 도출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설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서 완성된 설문지 형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문지에 사용된 어떤 용어는 이 설문조사에만 사용되는 특수한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설명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필요하다면 추가 용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임원들은 질문 1-41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나 설문지에 있는 모든 항목들을 끝내고 마지막에 각각 서명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설문지를 기존의 우리에게 제공된 정보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정보를 검토하고 새롭게 작성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 질문 >

#### 1. 일반적인 정보

당신에 관한 정보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

생년월일 :

주택주소 :

사무실주소 :

사회보장번호 :

이메일주소 :

전화번호 :

직업 :

A. 현재의 직업과 가장 최근의 직업부터 지난 5년간의 직업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명과 주소	업종	직위 (이사직 포함)	개시 연/월	종료 연/월
---------	----	----------------	--------	--------

---



---



---



---

B. 이사직 (오직 임원분들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임원으로 근무하거나 최근 5년간 근무했던 상장기업이나 투자회사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당신이 동일 펀드 계열에서 2개 이상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있다면 각 포트폴리오를 개별적으로 적기보다는 펀드 계열을 명시하고 당신이 임원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개수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2. 펀드에서의 직위

A. 당신 혹은 당신의 직계가족의 현재 직위나 혹은 과거 5년간의 모든 직위를 적어주시시오.  
(이사직)

기관명	직계가족의 이름과 본인과의 관계(가능하다면)	직위	개시 연/월	종료 연/월
-----	--------------------------------	----	--------	--------

---



---



---

B. 가능하다면, 펀드 내에서 당신이 지니고 있는 직위를 명시해 주십시오.(명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

C. 이사회에서 임원의 자격요건(오직 임원들만 답변 요망)

2010년 3월을 시작으로, 임원선출과 관련한 의결권 위임 설명서뿐만 아니라 펀드 등록설명서도 다음과 같은 사항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 임원의 특수한 경력, 자격 요건, 속성 혹은 펀드 운용과 관련하여서 그 사람이 공시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이러한 공시는 그 사람의 특별한 능력 및 자격 요건에 대한 정보를 설명해야 합니다.” 펀드운용회사는 조언을 받아 일할 것이며, 이러한 요건에 대응하는 공시를 발표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수탁자에 대한 조언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시에 포함시켜야 할 귀하의 경험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



---



---



---

3. 펀드내의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A. 2010년 8월 15일 현재 당신이 소유한 펀드의 주식 숫자(株數)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유권의 성격에 대해 기입하십시오.

주식 보유량	실질적 소유권의 성격			
	투표권		투자권	
	단독	공동	단독	공동

\* 주 : 실질적인 소유권(beneficiary ownership)  
주식을 소유해서 배당이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증권회사가 주주를 대신해서 보관하는 경우 명목적 소유권(nominee ownership)이 된다.

B. 2010년 8월 15일 현재 당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주식의 금액을 기입하십시오.

없음	\$1-\$10,000	\$10,001-\$50000	\$50,001-\$100,000	\$100,000 <

C. 2010년 8월 15일 당신이 소유한 주식의 금액범위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일 투자계열 회사 내에서 당신이 관리/감독하는 모든 투자회사들이 대상이 됩니다.

없음	\$1-\$10,000	\$10,001-\$50000	\$50,001-\$100,000	\$100,000 <

D. 질문4A에 기입된 주식의 일부가 증권으로서 담보되어졌다면, 담보된 주식의 숫자를 기입하십시오.

---



---

E. 질문4에 기입된 주식중 일부가 당신이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60일 이내에 획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이 주식을 획득할 권리의 성격과 숫자를 기입하십시오.

---



---



---

F. 당신이 위에 기입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면, 다른 소유주와 관계를 설명하십시오.

---



---



---

G. 당신이 위에 언급된 실질적인 소유권을 포기하기를 원한다면 관련 주식수와 권리포기의 이유를 기술하십시오.

---



---



---

4. 당신이 경제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고 전통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인 소유주로 인정되는 펀드의 주식을 명시하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질문4에 포함되지 않았고,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A. 당신이 현재 혹은 미래에 소득 혹은 원금으로 확보한 신탁, 부동산이나 투자계좌.

B. 그리고 당신의 배우자, 미성년인 자녀들 혹은 친척들이 보유한 주식들, 혹은 당신과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의 자녀들 혹은 친척이 보유한 주식.

펀드명	보유량	이윤에 대한 설명

C.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은 위에 열거한 사람들이 가진 주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직위를 지지하여 권고한 특별한 상황이나 상쇄되는 사실들은 당신의 질문 답변에 제시될 것입니다.

5. 5% 실질적인 소유권

당신이 실질적인 주식을 5%이상 보유한 사람이나 그룹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이나 그룹의 이름을 기술했 주십시오.

---



---



---

6. 가족구성원들

당신이 직계가족이거나 혹은 당신과 다음에 언급된 사람들 중에 누군가와 가족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i)어떤 경영진, 고용자, 공동파트너, 임원 (ii) 펀드의 자문위원회의 구성원 (iii)펀드의 경영진이 되기로 선택된 사람 (iv)펀드의 임원으로 지명된 자 (v)펀드와 연계자.

만일 그렇다면,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 ) 아니오 ( )

---

---

---

#### 7. 고용과 임원직 협정

당신은 펀드의 이사회나 경영진의 구성이나 어떤 직위에 사람을 임명하거나 선택하는 것에 관한 어떤 협정이나 합의를 알고 계십니까?

※ 주 : 그러한 협정이나 합의의 예시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i) 임원 A와 임원 B는 어떤 특정한 경영진에게 투표하기로 서로 약속하였다. (ii) 주주 A와 주주 B는 지명된 임원에게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투표하기로 서로 동의하였다. 당신은 임원이나 경영진과의 협정이나 합의를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 ) 아니오 ( )

---

---

---

---

#### 8. 펀드와의 거래(오직 경영진만이 답변바람)

지난 3년 이내에 어떠한 거래를 기술하거나 펀드나 자회사와의 현재의 제안된 거래를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당신

(2) 당신 직계가족

(3) 회사 혹은 다른 법인 (i) 당신이 임원이외의 직위를 가지고 있거나 (ii) 10% 혹은 그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A)당신 직계가족 (B) 다른 임원, 기금의 경영진 혹은 임원으로서의 지명자 및 그 직계가족을 포함하여 측정) (iii) 직위를 보유한 파트너 혹은 10% 혹은 그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제한된 파트너(위의 (ii)에 언급된 (A),(B)포함)

이 질문을 위한 직계가족의 특별한 정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 : 자금 거래, 협정, 일련의 유사한 거래를 포함합니다. 관련된 거래관련 고용 및 보상을 포함합니다. 6개월 이내 매매한 환매수익과 관련된 부채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모든 직간접적인 대출 및 신용과 부채를 포함합니다. 당신은 보통의 업무 관련 여행과 비용 지출을 위한 일반적인 거래 규정과 일반적인 사업과정에서의 거래를 위한 다른 거래에 영향받기 쉬운 재화 및 서비스 구매와 관련된 부채를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



---



---

9. 펀드에 대한 부채

당신 혹은 당신 동료의 부채가 지난 3년 이내의 어느 시점에 \$120,000을 초과한다면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명	
동료와의 관계	
관련기간 동안 최대 미지급금	
부채의 성격 또는 관련 거래	
현재 미지급금	
이자율	
상환일자	

※ 주 : 6개월 이내 매매한 환매수익과 관련된 부채뿐만 아니라 모든 직 간접적인 대출, 신용 및 부채를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증권 거래의 보고

당신이 증권거래법의 3,4,5형식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펀드 주식에 대한 어떤 거래-단, 그런 거래가 섹션 16에 의거해서 면제되었거나 당신이 요구한 신청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가 있습니까? 당신은 적절한 시기에 3,4,5 형식에 의해 신청을 못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위의 두 질문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한 대답이 “네” 라면 “네”에 체크해 주십시오. 펀드는 공표 목적을 위한 영향에 대한 확증으로서의 “아니오”라는 대답을 고려할 것입니다. 형식 3-실질적인 소유권의 공표-은 펀드의 경영진 혹은 임원이 되고 난 후 10일 이내에 신청 되어야만 합니다. 형식4-실질적인 소유권의 변화에 대한 공표-는 거래가 이행된 후 2거래일 이내에 신청되어야만 합니다. 형식5-이전에 보고되지 않은 거래에 대한 공표-는

각 회계연도의 종료 후 45일 이내에 행해져야 합니다.

네 ( ) 아니오 ( )

당신이 “예”라고 답변했다면, 최근의 보고되지 않은 보고서의 숫자나 시의 적절하게 보고하지 않은 거래의 숫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11. 이해관계

A. 당신은 최근에 어떤 직간접적인 이해 혹은 당신이 임원이나 법적인 실행자로 지명되거나, 다른 연계에 의해서 발행한 주식과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네 ( ) 아니오 ( )

B. 당신은 다른 연결 실체에 대해서 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 ) 아니오 ( )

만일 그렇다면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주 :

1.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실질적인 소유권보다 광범위합니다. 당신이 보통 실질적인 소유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의 소득의 일부가 당신의 고용자가 소유한 증권에 의해서 발생한 소득에 의해서 수입이 되었다면, 당신은 그 증권에 대해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을 위한 목적으로 당신은 실질적인 소유권의 모든 정의들을 사용하는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측정해야 하며, 가능한 이해관계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2. 만약 당신이 뮤추얼 펀드의 경영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은 일반적으로 뮤추얼 펀드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12. 보험과 보증

당신은 펀드의 임원이나 경영자로서의 능력에서 발생한 부채관계에 대한 보증 하에 체결한 어떤 계약이나 협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네 ( ) 아니오 ( )

13. 사외 이사 및 경영진

당신은 미국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네 ( ) 아니오 ( )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미국에 있는 당신의 대리인에게 공시를 할 권리를 부여하였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다면,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14. 투자은행과 고용 관계

당신은 투자은행 직원이거나 투자은행과 관련된 사람입니까?

네 ( ) 아니오 ( )

15. 펀드의 공인회계사에 대한 관심

A. 최근 3년 내에 한번이라도, 당신이나 당신의 동료들 중 하나라도, 펀드와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회계 법인과의 관계에 관해 직접 혹은 간접적인 관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네 ( ) 아니오 ( )

있다면, 기술해 주십시오.

---

---

B. (a) 최근 3년 중에 한번이라도, 당신이나 당신의 동료들 중 하나라도 펀드와 독립적인 회계 법인의 선택에 당신이 펀드의 임원이라는 이유 외의 이유로 직접 혹은 간접적인 어떠한 관심 혹은

(b) 펀드의 임원으로써 가지는 독립적 판단 능력을 약화시킬 다른 어떤 관심이나 관계가 있다면 기술해 주십시오.

네 ( ) 아니오 ( )

---

---

---

---

만약 17번부터 26번 문항 중 한 개에 대한 대답이라도 ‘예’라면 별도의 기술서에 세부내용을 기술해주시시오.

16. 중범죄/경범죄 여부

당신은 중/경범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받거나 유죄를 인정하는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법규 위반과 그 외 (i) 투자 및 투자관련 사업과 무관한 혹은 (ii) 재무관련 과 무관한 경미한 위법 행위는 제외)

네 ( ) 아니오 ( )

17. 투자관련 사업 위반

어떠한 법령이라도 (A) 당신에게 (영구 혹은 임시적으로) 투자관련 활동과의 연결을 금지한 적 있습니까?

네 ( ) 아니오 ( )

(B) 당신이 투자관련 법규나 규정의 위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네 ( ) 아니오 ( )

(C) 당신에게 (영구 혹은 임시적으로) 어떤 형태의 사업 행위와의 연결을 금지한 적 있습니까?

네 ( ) 아니오 ( )

18. SEC(증권거래위원회)/CFTC(선물거래위원회) 위반

SEC나 CFTC가

(A) 당신이 거짓 진술을 하거나 누락을 했음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네 ( ) 아니오 ( )

(B) 당신이 그들의 규정이나 법규의 위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네 ( ) 아니오 ( )

(C) 투자관련 사업이 금지, 정지, 취소되거나 혹은 제한된 사업을 하도록 허가하는 것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네 ( ) 아니오 ( )

(D) 당신의 등록을 거부, 정지, 혹은 취소하거나 당신의 행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규제받은 적이 있습니까?

네 ( ) 아니오 ( )

#### 19. 규제 당국의 제재

SEC와 CFTC 외의 연방 규제 당국 혹은 주 규제 당국이

(A) 당신이 (i) 거짓 진술을 하거나 누락을 했음을, 혹은 (ii) 부정직하거나 불공평, 혹은 부도덕했음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네 ( ) 아니오 ( )

(B) 당신이 투자관련 법규나 규정의 위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네 ( ) 아니오 ( )

(C) 당신의 등록을 거부, 정지, 혹은 취소하거나 당신의 행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규율한 적이 있습니까?

네 ( ) 아니오 ( )

(D) 지난 10년 사이에 당신의 투자관련 행위와의 연결에 반대하는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네 ( ) 아니오 ( )

(E) 당신의 등록을 거부, 정지, 혹은 취소하거나, 투자관련 사업과의 연관을 막거나, 당신의 행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규율한 적이 있습니까?

네 ( ) 아니오 ( )

(F)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로서의 당신의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정지당한 적이 있습니까?

네 ( ) 아니오 ( )

20. 규제 조직의 제재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혹은 유사거래시설\*, 증권산업규제국(FINRA) (구 NASD, 미국 증권업협회), 선물협회 혹은 회원들에게 규제 권한이 있는 거래소, 협회, 법인 혹은 조직 등) 자체 규율 조직이:

(A) 당신이 거짓 진술을 하거나 누락했음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네 ( ) 아니오 ( )

(B) 당신이 그들의 규율을 어기는 데에 관련이 있음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네 ( ) 아니오 ( )

(C) 당신이 투자관련 사업이 등록을 거부, 정지, 혹은 취소당하는 원인으로 지목한 적이 있습니까?

네 ( ) 아니오 ( )

(D) 제명, 자격정지, 다른 회원과 함께 협회에서 금지 혹은 정지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당신의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당신을 규율한 적이 있습니까?

네 ( ) 아니오 ( )

(E) 다른 방식으로 당신을 규제 혹은 명령의 대상, 혹은 대상의 일부로 한 적이 있습니까?

네 ( ) 아니오 ( )

\* 주: ECN이나 MTN등 외국에는 거래소 외에 유사 거래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21. 국외 조직으로부터의 규제.

외국 정부, 법원, 규제 당국 혹은 거래소가 투자 혹은 사기와 관련한 혐의로 당신에게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네 ( ) 아니오 ( )

22. 기타 규제.

최근 별지에 받은 “Questionnaire for Trustees/Officers”이나 앞서의 질문들에 대한 응답들에서 서술되지 않은 내용들로, 당신이나 당신이 속한 집단이 다음의 사항의 위반에 관하여 어떤 연방 혹은 주 법원에서라도 반복할 수 없는 행정처분, 판단, 결정 혹은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네 ( ) 아니오 ( )

(A) 연방 혹은 주 증권법 혹은 선물법 혹은 관련규제.

(B) 임시, 혹은 영구 명령, 반납 혹은 환원 명령, 민사 금전 배상 혹은 임시 혹은 영구  
정지 명령, 혹은 제외 또는 금지명령을 포함하여, 금융기관 혹은 보험사로부터의 법적  
혹은 관련규제

(C) 우편 혹은 송금 사기 혹은 어떤 사업 법인과 관련한 사기를 금지하는 형태의 규제  
혹은 법령

현재 진행 사건들

당신은 질문 17~22의 질문에 “예”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사건들에 현재 연루되어 있습니까?

네 ( ) 아니오 ( )

23. 기타 관련 사항.

특정 법원 결정들은 공기업과 그의 임원 및 경영진은 연방 증권법에 의거하여 해당 직책에  
종사할 사람들의 적합성에 관한 특정한 사항들에 대해 문서로써 공개하도록 했다. 관련  
된 사항들은 특정 공기업 혹은 특정 회사와 관련이 없는 과거의 위법행위들을 포함할  
수 있다. 한 사건의 경우에는 심지어 단순한 혐의조차도 특정 사실과 상황에 따라서는  
공개되어야 한다. 공개 가능한 사항들은 사기업 혹은 공기업과 관련된 신뢰 혹은 신탁  
의무의 배임, 그러한 기업과 관련된 업무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부적절한 사업 판단,  
자금 유용, 기업 기회의 유용, 허용 불가능한 사적 금융거래, 이해충돌의 미공개, 증권  
사기 및 유사한 상황에 관한 대기 중인 그리고/혹은 완료된 소송과 관련된 것에서 발생할  
수 있다. 펀드가 이러한 공개 의무가 적용 가능한 것인지 확인 가능하도록 별도의 종이를  
이용하여 지난 10년 간 있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귀하에게 불리한 판결, 청구, 혐의,  
소송 혹은 수사 및 유사한 성질의 상황, 혹은 귀하가 보기에 앞서의 공개 기준 하에서  
언급 혹은 해명이 필요한 사항을 기술해 주십시오.

24. 증권회사 지급불능

귀하는 파산하거나 증권투자자보호법률에 의해 경영자가 지정되거나 직접 지급 절차를  
겪은 증권회사와 관련된 적 있습니까?

네 ( ) 아니오 ( )

25. 파산 혹은 지급불능

(i) 귀하, (ii) 해당 기록으로부터 2년의 시간 내에 귀하와 합병 관계에 있었던 회사, 혹은 (iii) 해당 기록으로부터 2년 내에 귀하가 경영진으로 있었던 기업에 대하여 연방 파산법이나 주 지급불능법에 의하여 신청이 되거나, (i), (ii), 혹은 (iii)의 사업 혹은 소유물에 관하여 수탁자, 법정관리인, 혹은 유사한 담당자가 배정된 적 있습니까?

네 ( ) 아니오 ( )

26B. 펀드로부터의 보상

펀드와의 합의에 따라 경영진의 보상 이외의 보상을 펀드로부터 받았습니까?

네 ( ) 아니오 ( )

만약 “그렇다”면, 지난 3년 내에 그러한 합의에 따라 수령한 금액을 적시하고 그 합의 내용을 기술하십시오. 경영진의 보상을 제외한 어떠한 형태의 합의에 대한 보상을 모두 포함하십시오; 예를 들어, 컨설팅 계약에 따른 보상, 비현금성 보상, 매수선택권(call option) 등.

---

---

---

26C. 뮤추얼 펀드와의 관심

귀하는 뮤추얼 펀드 사업과 어떤 관점에서라도 관련이 있는 사람이나 자회사를 갖고 있는 사람의 경영진, 임원진, 임원, 파트너, 부파트너 혹은 직원입니까?

네 ( ) 아니오 ( )

만약 그렇다면, 기술하십시오.

---

---

---

26D. 기타 사업들

위의 질문들의 응답으로 기술되지 않은 어떠한 형태로라도 귀하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직종, 직업 혹은 고용에 대하여 기술하십시오. 임원, 경영진, 고용인, 파트너, 혹은

임원진으로서 활동하는 회사들을 포함하십시오.

---

---

---

귀하가 펀드의 임원진이 아닌 이상 아래의 질문들에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서명 페이지는 확인해주십시오.

26. 거래 상대방.

지난 3년간 귀하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물질적 거래, 혹은 관계 회사가 관련되어 있었거나 있는 중요거래에 있어서 중대한 관련이 있었습니까?

네 ( ) 아니오 ( )

만약 “그렇다”면 기술해 주십시오. 거래에서의 관계의 속성과 귀하의 이익에 따른 대략적인 금액을 포함하되, 이익의 금액을 규정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파트너십에서 파트너로서 이익이 발생할 때에는 거래와 관련된 금액을 기술하십시오. 펀드의 사업이나 운영과 관련이 없거나 펀드 또는 펀드의 관계회사 둘 다 관련이 없는 거래에 관한 귀하의 이익에 관한 정보는 기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

---

---

27. 중개자 고용

귀하는 지난 3년 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해 등록된 브로커 혹은 딜러였거나, (i) 펀드, (ii) 고문으로 활동하는 다른 어떤 투자 회사, (iii) 중개업 알선 재량이 있는 계좌, (iv) 투자 혹은 투자자 서비스의 목적으로 투자자들에게 (A) 펀드 혹은 (B) 고문으로 활동하는 다른 어떤 투자 회사로서 스스로를 규정하는 투자회사와 관련이 있는 어떠한 포트폴리오 거래나 자기금융 거래나 지분 배분에 관련이 있는 브로커나 딜러와 연계된 사람인 적이 있습니까?

네 ( ) 아니오 ( )

28. 이사직.

귀하가 경영인으로서 활동하는 회사나 사업조직으로서 상장기업 혹은 투자회사를 열거 하십시오. 같은 펀드계열의 두 개 이상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면, 각 포트폴리오를 별도로 열거하기보다는 펀드 계열을 적시하고 펀드 계열에서 경영인으로서 관리하는 포트폴리오의 개수를 제공하십시오.

---

---

---

29. 펀드 계열에서 관리하는 포트폴리오

현재 귀하가 관리하는 혹은 선출되었을 때 관리할 펀드 계열 혹은 펀드 내의 포트폴리오의 개수를 적으십시오.

---

30. 증권 거래

귀하가 지난 2년 내에 다른 어떤 연계 회사로부터 발행된 증권을 사거나 팔았다면, 혹은 그러한 조직의 증권의 매매와 관련된 당사자라면, 그 거래와, 거래 당사자들을 제시하고, 지불의 방법을 기술하고 펀드의 어떤 정책에 선택 혹은 임명된 사람과 관련된 펀드의 이사회 구성에 관련된 어떠한 합의 혹은 이해에 관하여 기술하십시오. 이는 어떠한 형태든 이윤 분배 혹은 상여금 계획도 포함합니다.

---

---

---

---

※ 참고 : 동급 발행 증권의 1% 미만의 거래에 관해서는 기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원한다면, 상장기업에 포함된 증권의 수와 종류를 비율 대신에 기술할 수 있습니다.

증권의 수와 종류	회사 또는 법인

31. 투자회사와의 사업관계

지난 3년 내에 귀하는 앞서의 질문들에 대한 응답으로서 공개한 것 외에, (i) 펀드, (ii) 해당 조직의 어떠한 경영진, 주인 혹은 지배 조직, 혹은 (iii) 고문으로서 활동하는 투자 회사와 사업적인 혹은 전문적인 관계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네 ( ) 아니오 ( )

그렇다면 기술하십시오.

---

---

---

※ 참고: 펀드 (혹은 펀드와 동일한 고문이 있는 투자회사)의 경영진 혹은 주주로서의 관계는 기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32. 은행 고용

귀하는 은행 혹은 은행을 지배하는, 은행에 의해 지배받는, 혹은 일반적 지배를 받는 조직의 경영진, 임원 혹은 고용인입니까?

네 ( ) 아니오 ( )

이 질문을 위해서는 “지배”의 특별한 정의를 참고하십시오.

33. 법적 변호인으로서의 행위

지난 3년 내에 귀하 혹은 귀하의 고용인, 고용주 혹은 파트너들이 펀드의 법적 고문인으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까?

네 ( ) 아니오 ( )

34. 관련 당사자들에게의 대출

귀하, 혹은 귀하가 관련자로서 속해 있는 조직의 어떠한 사람이라도, 지난 3년 내에 (i) 펀드, (ii) 고문으로 활동하는 다른 어떤 투자 회사, (iii) 중개업 알선 재량이 있는 계좌, (iv) 투자 혹은 투자자 서비스의 목적으로 투자자들에게 (A) 펀드 혹은 (B) 고문으로 활동하는 다른 어떤 투자 회사로서 스스로를 규정하는 투자회사, 혹은 (iv) 중개 알선 재량 혹은 차입 권한이 있는 계좌에 대해서 자금을 대출해 준 적이 있습니까?

네 ( ) 아니오 ( )

35. 계류 중인 법적 분쟁

펀드의 사업에 의해 발생하는 일반적 통상 법률 절차를 제외하고, 귀하 혹은 귀하와 관련된 사람 혹은 조직이 관련된, 혹은 귀하 또는 (a) 펀드와 반대되거나 펀드와 연계되어 있거나 (b) 펀드 혹은 펀드의 관련사와 반대되는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그 조직과 계류 중인 모든 법적 분쟁을 기술하십시오. 해당 소송이 계류 중인 법원의 명칭, 시작 일자, 관련 당사자, 그리고 소송에 제기되는 사실관계와 모색되는 해결방안을 명시하십시오.

---

---

---

36. 특정 경영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의 직책

귀하 혹은 직계 가족 구성원이 최근 3년 사이에 조직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배하거나 지배당하는, 혹은 일반적 지배하에 있는 조직의 경영자로 현재 활동하는 사람을 지난 3년 내에 이사회 의 일원으로 포함한 회사에서 경영진으로 활동한 적 있습니까?

네 ( ) 아니오 ( )

만약 그렇다면 다음을 기술하십시오.

직계 가족의 이름:

회사명:

회사 담당 직책 및 근무 기간:

회사 경영자의 이름 및 근무 기간:

해당 조직을 가진 회사의 경영진의 담당 직책:

37. 의결권을 가진 증권

귀하는 상장기업 혹은 비상장기업에서 발행된 증권의 5% 이상의 주식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거나, 혹은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거나 그러한 회사를 다른 방법으로 지배하고 있습니까?

네 ( ) 아니오 ( )

만약 그렇다면, 발행자와 소유, 지배하는 주식의 비율을 적시하십시오.

---

---

---

38. 상장기업에서의 감사위원회에서의 근무

귀하는 (펀드 이외의) 상장기업 한 곳 이상의 감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네 ( ) 아니오 ( )

만약 그렇다면 아래에 그러한 상장기업의 이름을 모두 열거하십시오.

---

---

---

39. 실질 소유권

A. 수익권으로써 귀하 혹은 귀하의 직계가족구성원이 (ii) (투자 회사와 연계 조직이 아닌) 다른 연계 조직으로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배하거나 혹은 지배당하거나 혹은 일반적 지배하에 있는 각 등급별 증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B. 40A와 40B의 목적을 위해, 귀하의 수익 소유권은 실질 소유권의 정의 두 가지 모두에 의해 측정되어야 합니다.

소유주명	소유회사명	소유자와의 관계	등급명	증권의 가치	등급의 비율

C. 만약 귀하가 연계 조직의 증권을 수익 목적으로 소유한다면 그 조직과의 관계를 기술하십시오.

---

---

---

40. 중요 이해관계

최근 5년 안에 직접 혹은 간접적인 이해관계로서, 귀하 그리고/혹은 직계 가족 구성원의 1인 이상이 합계로 소유하는 \$120,000 이상의 가치를 가진 다른 연계 조직을 기술하십시오. 위의 질문 12번 혹은 40번의 해당하는 응답들과 상호 참조해도 됩니다.

이자 수취인	이자에 대한 설명	총 가치

41.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

A. 최근 3년 안에 직접 혹은 간접적인 이해관계로서, 귀하 그리고/혹은 직계 가족 구성원의 1인이 함께 관여하여 \$120,000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다음 사람 혹은 조직이 당사자였거나 당사자인 거래 혹은 유사한 연속거래를 기술하십시오.

- (1) 펀드;
- (2) 펀드;
- (3) 관계투자회사 혹은 관계헤지펀드;
- (4) 관계투자회사 혹은 관계헤지펀드의 경영자;

B. 최근 3년 안에 직접 혹은 간접적인 이해관계로서, 귀하 그리고/혹은 직계 가족 구성원의 1인이 함께 관여하여 \$120,000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다음 사람 혹은 조직이 당사자였거나 당사자인 현재 제안되어 있는 거래 혹은 유사한 연속거래를 기술하십시오.

- (1) 펀드;
- (2) 펀드의 경영자;
- (3) 관계 투자회사 혹은 관계 헤지펀드;
- (4) 관계 투자회사 혹은 관계 헤지펀드의 경영자;

	거래1
관련 당사자 혹은 단체	
이자 발생 사유	
이자의 성격	
거래금액	
이자금액(추정)	

	거래2
관련 당사자 혹은 단체	
이자 발생 사유	
이자의 성격	
거래금액	
이자금액(추정)	

※ 참고 : 질문 9, 10, 그리고 27번의 응답에 제공된 정보를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앞선 응답 중에서 해당 하는 것들은 상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연속거래에 관련된 금액을 계산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떤 리스 혹은 주기적 지불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모든 주기적 지불을 포함하십시오. 거래와 관련한 수익 혹은 손실의 규모와 무관하게 이윤 금액을 계산하십시오. 만약 자산의 매매와 관련이 있는 거래 라면 구매자가 지불한 자산의 가격을 적시하고, 만약 거래 2년 이전에 판매자가 구매한 것이라면, 판매 자가 지불한 가격도 표시하십시오. 모든 거래에는 대출, 신용상한 및 기타 부채도 포함됨을 참고하십시오. 매매 가격을 결정한 방법과 그 결정을 한 사람 혹은 조직의 이름을 명시하십시오. 특별 대우를 받지 않 은 이상 신용카드 계좌, 중개 계좌, 주택임차 등의 통상적 도매 거래는 제외하십시오.

#### 42. 중요한 관계

A. 최근 3년 안에 직접 혹은 간접적인 관계로서, 귀하 그리고/혹은 직계 가족 구성원의 1인이 함께 관여하여 \$120,000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다음 사람 혹은 조직이 당사자였거나 당사자인 거래 혹은 유사한 연속거래를 기술하십시오.

- (1) 펀드;
- (2) 펀드의 경영자;
- (3) 관계투자회사 혹은 관계 헤지펀드;
- (4) 관계투자회사 혹은 관계 헤지펀드의 경영자;

	거래1
관련 당사자 혹은 단체	
이자 발생 사유	
이자의 성격	
거래금액	
이자금액(추정)	

	거래2
관련 당사자 혹은 단체	
이자 발생 사유	
이자의 성격	
거래금액	
이자금액(추정)	

B. 최근 3년 안에 직접 혹은 간접적인 이해관계로서, 귀하 그리고/혹은 직계 가족 구성원의 1인이 함께 관여하여 \$120,000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다음 사람 혹은 조직이 당사자였거나 당사자인 현재 제안되어 있는 거래 혹은 유사한 연속거래를 기술하십시오.

- (1) 펀드;
- (2) 펀드의 경영자;
- (3) 관계 투자회사 혹은 관계 헤지펀드;
- (4) 관계 투자회사 혹은 관계 헤지펀드의 경영자;

	거래1
관련 당사자 혹은 단체	
이자 발생 사유	
이자의 성격	
거래금액	
이자금액(추정)	

	거래2
관련 당사자 혹은 단체	
이자 발생 사유	
이자의 성격	
거래금액	
이자금액(추정)	

※ 주 : 주기적 지불이 관련된 관계와 관련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모든 주기적 지불을 합산하십시오. 간접적인 관계의 경우, 표시된 대로 간접적 관계가 존재하는 회사와 그 회사와 귀하 그리고/혹은 귀하의 직계 가족 구성원의 연계 속성을 적시하고 “수행된 사업의 양” 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 회사가 관계를

위해서 수행한 사업을 사용하십시오. 특별 대우를 받지 않은 이상 신용카드 계좌, 중개 계좌, 주택임차 등의 통상적 도매 거래는 제외하십시오.

43. 이해관련자

증권거래위원회가 귀하를 펀드의 이해관련자로 지정하는 명령을 발행한 적이 있습니까?

네 ( ) 아니오 ( )

있다면 세부사항을 제공하십시오:

---

---

---

44. 수수료

펀드로부터 펀드의 경영진으로서의 지위, 혹은 펀드의 감사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보수 외에 컨설팅, 자문 혹은 보수성 수수료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받았거나 받을 예정입니까?

네 ( ) 아니오 ( )

나는 앞서의 정보들이 펀드의 임원 혹은 경영자로서의 자질을 확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이해상충을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공시 자료를 통해 공개될 정보의 수집을 위해 요청되었음을 이해합니다. 만약 내가 임원 후보라면, 나는 이렇게 지명되는 것에 동의하며 선출되었을 때 근무하고자 합니다. 나는 여기에 제공된 정보가 사실이며 아래 서명된 날짜 현재 최선의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서명합니다.

서명 :

날짜 : 2010. . .

이상으로 이사의 개인적 자질에 대한 평가를 설명하였으며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의 활동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 있다.

〈표 2〉 이사회 평가 체크 리스트

이사회참여	예	아니오	고려사항
이사회와 소위원회에 매 회의마다 모두 참여하는가.			
다른 소수의견도 존중하는가			
이사회와 소위원회에서 신입이사도 환영하고 열심히 참여하게 유도하는가			
정책 목표 설정			
회사 정책에 대해서 이사회 전원이 잘 알고 있는가. 문서로 된 정책 목표가 있는가. 계획에 대해 이사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가. 매년 1회 이상 장·단기 목표에 대해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가. 각자가 직무 명세서를 이해하고 있다.			
이사회 직무			
이사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이 잘 지켜지고 있다. 이러한 직무는 계속적이고 규칙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사회와 경영진 사이에서 각 분야의 책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가. 회의 진행과정이 신중하고 회의참가자 모두의 의견개진이 잘 되고 있는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잘 따르고 있는가. 이사회에서 중요한 서류가 전부 검토되고 있다. 현재 및 장기적으로 필요한 정책 수단에 대해 모두 이해하고 있는가.			

## 5. 결론

본론에서 설명하였던 사외이사제도 문제는 이제 발상지였던 미국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 Enron, Worldcom 등의 회계부정과 부실사태로 2002년에 제정되었던 Sarbanes & Oxley 법도 비효율적이게 된 것은 기업 지배구조에서 사외이사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세계적인 투자은행들도 부실을 면치 못하였다. 시티그룹의 경우에 18명의 이사 중 16명이 사외이사였으나 문제가 생겼다. 이는 사외이사가 절대다수를 점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sup>25)</sup>

이제 미국의 경우는 훌륭한 전문적 자격을 가진 사외이사가 소수로 운영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sup>26)</sup> 문제는 전문역량을 갖춘 이사를 확보할 수 있느냐이고 이들이 사내 이사와의 정보차이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사외이사라고 하더라도 이사회를 위해서 시간을 어떻게 투입하는가 하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연 200시간 이상 투입 (여행 시간 제외) 하지만 부족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기업 내부정보는 물론 외부 경제, 경영환경까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문제는 훌륭한 사외이사의 선임과 함께 이들의 보수를 어떻게 책정하는가 하는 것이다. S&P 500 기업의 사외이사들의 평균 213,000 US달러를 받는데 비해서 보다 위에서 설정한 자격은 갖춘 사외이사들이라면 400,000 US달러 이상 받아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다.

이는 늘어나는 법률적 책임과 업무량에 기인한다. (사실 수백만 달러를 받는 미국의 CEO들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보상이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외이사는 급여를 공돈 받는 것처럼 생각해서 아주 낮은 편이다. 최고 7천 만원 미만인 것과 비교해 보면

---

25) Robert C. Pozen, The case for professional boards. Harvard Business Review, 2010, 12, p.52.

26) 위의 논문. p.52-55.

좋은 시사점이 될 수 있다.<sup>27)</sup> 그리고 보수 구성에 있어서도 회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 기본급과 함께 참석 수당을 상향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외이사의 책임을 인식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보상수준과 함께 경영책임배상 보험수준도 인상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도 각종 관련 법규가 법률가 중심으로 제정, 개정되고 있으나 이제는 경영전문가들 차원에서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차원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사외이사제도의 성공여부는 회사에 따라 다르고 특히 경영자나 대주주들이 이를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이해와 직결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문제는 제도적 개선이나 모범규준제정과 함께 이를 강제적으로 이행하느냐 여부를 따지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보다 훌륭한 자격을 갖추고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해서 이들에게 풍부한 경영정보를 제공해주고 풍부한 지원을 통해서 합리적인 경영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주주와 상장회사를 보호하고 사외이사제도를 발전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27) 권세훈, 앞의 연구. p.58. 사외이사 1인당 보수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가 유가증권 시장 5.3%, 코스닥시장 4.2%에 불과하고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31.6%가 3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이다. 한때 주식보상 (Stock option)을 주었으나 폐지되었다.

## <참 고 문 헌>

### 1. 국내문헌

권세훈, 중소기업 사외이사제도의 효율적인 운용방안, 자본시장연구원, 2010. 11.

김화진, 이사회, 박영사, 2007. 2.

이병윤, 이시연, 은행권 사외이사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09. 12.

이시연, 금융회사 지배구조 리스크 완화 방안 토론회, 2011. 4. 12.

상법

증권거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판례

대법원

서울남부 지방법원

은행등 사외이사 모범규준, 전국은행연합회, 2010. 1. 25.

사외이사 직무수행규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7. 12. 13.

보도자료, 은행등 사외이사 모범규준 제정, 전국은행연합회, 2010. 1. 25.

## 2. 외국문헌

Black, B., et. al., Liability risk for outside directors: a cross-border analysis, European Financial Management, 2004.

OECD European Bank, Corporate Governance of Banks in Eurasia, A. Policy Brief, 2008. 4.

FSA, The Fit and Proper test for approved persons.

Robert C. Pozen, The case for professional boards, Harvard Business Review, 2010. 12.

Walker David, A review of corporate governance in UK banks and other financial industry entities, 2009. 7.